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강대호, 김정태, 김태수, 김혜련, 박상구, 송아량,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고,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방치책들이 마련되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
-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13호 신설).
- 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77조(시공사 등의 선정기준) ①</p> <p>· ② (생략)</p> <p><u><신설></u></p> <p>③ ~ ⑥ (생략)</p>	<p>제77조(시공사 등의 선정기준)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u></p> <p>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